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63 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윤건영・박지원・이기헌

신정훈 • 김영배 • 채현일

소병훈ㆍ이인영ㆍ모경종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「국회법」에서는 국회의 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, 본인 소유의 토지·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 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.

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(안 제 3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단서 중 "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"를 "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겸직 제한) ① 변호사는	제38조(겸직 제한) ①
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	
없다. 다만, 국회의원이나 지방	<u>지방의회</u>
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	<u> 의원 또는 상시</u>
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	
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	
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